



- . 1/2 + 1/2), 국장지정(국,중,공,2,천) 3. 취락:개발진흥·지구단위·중앙행장협의(면적과 계획관련 없이 지정이 가능한 지역)
- 4. 구역지정 후 계획수립가능(자녹생녹도시외·주+상+공=30%이하, 중앙행장협의(자보X), 개발계획을 공모한 경우)
-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포함가능(비용/수용사용(토지세부목록고시)/세입지/순환)..... "비용 +ㅅㅅㅅㅅ 나중에 수립해도 된다!!
- 실시계획(지구단위포학): 실시계획인가고시 =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로 가주(기존내용은 변경된 것으로 가주)
- 실효기간(3년, 2년(5년),3년(5년), 공사완료공고(수용방식)일의 다음날, 환지처분공고(환지방식)일의 다음날)
- 8. 시행자변경사유(미착수2년, 부도/파산, 지정/인가-취소, 1년인가 신청 X(연장6월)
- 9. 지자체등 시행사유(1/2+1/2, 1년+6월, 병행) 10. 수용방식 5가지(1.공취:법 2.이주대책 3.선수금 4.토지상환채권 5.조성 토지공급) 11. 입체환지의 개념, 원형지의 개발시 해제규정은 반드시 정리

- ① 발행권자: 모든 시행자
 - 민간시행자(지급보증 요함!!)
- ② 승인권자: 지정권자
- ③ 기명증권(상환), 양도시 명의이전
- ▶ 이주대책 ▶ 선수금 ▶ 조성토지공급(감정 가, 원칙:경쟁입찰, 단주공공추/수의계약(9개)
- ▶ 학교용지 등의 공급가격(감정가 이하 可)

- ② 환지처분효과(공고일의 **다음날**)
- 권리의 이전확정(물권변동)
- 입체화지의 효과(건축물과 대지지분확정)
- 체비지, 보류지의 소유권, 청산금 확정
- d) 미리 처분된 체비지는 매입한자가 등기마침때
- @ 환지등기(공고일로부터 14일내)
- 사업시행자가 촉탁, 신청에 의하여 일괄 등기 타등기는 제한(단 예외 있음)